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

제115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계 룡 시

# 부의 안전 목록

순번	제출부서	건 명	비고
1	기획감사실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개정 조례안	3
2	사회복지실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3	사회복지실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8
4	사회복지실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52
5	자치행정과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6
6	자치행정과	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63
7	세무회계과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65
8	환경위생과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84
9	건설교통과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90
10	건설교통과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94
	이하 여백		

#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88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개정이유

-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규제완화를 위해 개정이 필요한 조례를 일괄개정 하여 신속한 정비 및 법제행정 신뢰성 제고

## 2. 주요내용

### ○ 제명 변경

-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 ○ 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안 제3조)

- 인용법령 수정

### ○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안 제4조)

-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사항 규정

### ○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안 제5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완화 등
- 녹지지역지정 전 준공된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보전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허용
- 별표 7, 별표 14, 별표 21 개정

-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안 제6조)
  - 인용법령 및 위원회 명칭 수정
-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안 제7조)
  - 인용법령 수정
-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안 제8조)
  - 환경규제 개선권고에 따른 조문 삭제(안 제3조제1항, 안 제6조제1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사항 : 해당 없음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9. 8. ~ 9. 27.(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2.
- 3) 그 밖에 참고자료 : 붙임 3.(관련 공문)

##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개정 조례안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일괄개정 한다.

### 법령 개정 등에 따른 계룡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개정 등에 따라 우리시 조례에 반영해야 할 사항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정범위) 계룡시 조례 중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개정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제·개정 사항의 미반영 조항
2.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 조항
3. 그 밖에 중앙부처의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정비사항

제3조(「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의 개정) 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4조(「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의 개정)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

제5조(「계룡시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의 제1호 및 제2호 중 "「주택법」 제16조"를 각각 "「주택법」

제15조"로 한다

제25조제2항의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8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8조제4항 전단 중 "영 제2조제3항제6호"를 "영 제84조제4항제6호"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같은 조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8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단서 중 "2016년 12월 31"을 "2018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 7 2호 바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2호 사목, 아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1 2호 다목, 라목을 별지와 같이 한다.

제6조(「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개정)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를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한다.

제7조(「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의 개정)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

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43조제8항”을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으로 한다.

제3조 본문 중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8조(「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개정)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을 삭제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7호 및 조례 제29조제7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가. ~ 마. (생략)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출판업·인쇄업·금은세공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별표 4 제2호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 ----- ----- -- <u>해당하지 않는 것</u>
사. ~ 차. (생략)	사.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14호 및 조례 제29조제14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가. ~ 바. (생략)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사. <u>「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u> 아. <u>「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u> <개정 제‘사’목에서 이동>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영 제71조제1항제21호 및 조례 제29조제21호 관련)

현 행	개 정 안
1. (생략) 2. (생략) 가. ~ 나. (생략)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시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가목의 하수 등 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시설 <개정 제‘다’목에서 이동>

## 신·구조문 대비표

### 1. 계룡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계룡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관한법률</u>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 (목적) -----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p>

### 2. 계룡시 시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7조의2(기업도시 및 지역개발 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u>조례로 정하는 감면율</u>"은 100분의 100으로 한다.</p>

### 3. 계룡시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 (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25조(개발행위에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① ----- ----- ----- -----</p>

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2. (생략)

②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그 면적이 영 제55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미만인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1호 단독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제2호 공동주택(「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4. (생략)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

-----  
-----

1.~2.(현행과 같음)

② -----  
-----  
-----  
-----  
-----  
-----  
-----  
-----  
-----  
-----  
-----

1. -----  
----- 제15조에  
-----

2. -----  
----- 제15조에  
-----

1.~4.(현행과 같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신 설>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③ (생 략)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중에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형질변경(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제5호에서 이동>

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개정 제6호에서 이동>

제58조 (그 밖의 용도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영 제2조제3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은 8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  
-----  
-----  
-----영  
제84조제4항제6호에-----  
-----  
-----  
-----  
-----  
-----

⑤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일 것
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⑥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 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6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⑥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제5항에서 이동>

⑦ -----  
 -----  
 -----  
 -----  
 -----  
 -----2018년-----  
 -----  
 -----  
 -----  
 -----  
 -----  
 -----  
 -----  
 -----  
 -----  
 -----

<p>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p> <p>1. ~ 2. (생략)</p>	<p>----- -----</p> <p>&lt;개정 제6항에서 이동&gt;</p> <p>1. ~ 2. (현행과 같음)</p>
--	---

#### 4. 계룡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이하 “법” 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및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 “도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생략)</p> <p>1. ~ 6. (생략)</p> <p>7. 그 밖에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의(이하 “심의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등</p> <p>② · ③ (생략)</p>	<p>제1조(목적)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p> <p>----- ----- ----- ----- -----</p> <p>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 시 제출서류 등) ① (현행과 같음)</p> <p>1. ~ 6. (현행과 같음)</p> <p>7. -----</p> <p>----- 옥외광고심의위원회-----</p> <p>-----</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5. 계룡시 공동주택 지원 조례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제8항에 따라 계룡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을 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중 사용검사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8호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은 사용검사일로부터 적용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 ----- -----.</p> <p>제3조(적용범위) -----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 ----- ----- -----. -----.</p>

## 8. 계룡시 하수도 사용 조례

현행	개정안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30일 이내</p>	<p>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lt;삭제&gt;</p>

에 계룡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 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기타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의 적용구분(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생략)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 검사 등) ① 법 제24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받은 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을 완료한 때에는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점용 시설 또는 공작물의 준공 검사 등) <삭제>

② (현행과 같음)

# 관 계 법 령

## □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75조의2

제75조의2(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그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감면율을 각각 201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이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개발사업구역(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기존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기업(법률 제12737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의제된 지역개발사업구역 중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폐광지역진흥지구에 개발사업시행자로 선정되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종합휴양업과 축산업을 경영하는 내국인을 포함한다)이 그 구역 또는 지역의 사업장에서 하는 사업
4.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과 같은 법 제67조에 따른 지역활성화지역에서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가 하는 지역개발사업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⑥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삭제 <2014.1.14.>

나. 삭제 <2014.1.14.>

2.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상수도·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5. 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 1월 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1항 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4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결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 8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7.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충남계룡037		
정책명	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신현주	전화번호 042-840-2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점검항목별로 점검하고, 모든 항목에서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계룡시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 사항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금번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성별관련성이나 성별형평성 등의 사항과 관련성이 낮음. 이에,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9월 28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p> <p>기획감사실장 귀하</p>			

<붙임 3>

도민의 하나 된 힘으로 2016년 전국체전·전국장애인체전 성공개최!



# 충 청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6년도 충청남도 위임조례 일제정비 협조 요청

1. 2016년 행정자치부 지방규제개혁 평가계획 관련입니다.
2. 평가 세부지표안에 따르면 조례 위임사항을 포함한 법령이 제·개정된 경우, 공포 후 일정기간 이내에 지자체에서 해당 위임조례를 마련한 비율을 산정,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각 시·군에서는 소관 필수조례 및 규제완화조례가 금년도 10월말까지 반드시 정비(공포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정비대상 위임조례 목록 1부.  
2. 자치법규 입법절차 1부. 끝.

## 충 청 남 도 지 사

수신자 8) 시·군

주무관	법제팀장	교육법무담당	전결 2016. 7. 28.
협조자 주무관	주무관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시행	교육법무담당관-10007 (2016. 7. 29.)	접수	기획감사실-4797 (2016. 7. 29.)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청남도 기획조정실 / http://www.chungnam.net		
전화번호	041-635-2143	팩스번호	041-635-3038 / woojanghoon@korea.kr / 대국민 공개

행복한 변화 새로운 충남



되게 하려면 방법이 있고 안되게 하려면 규제가 보인다



# 충청남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5년도 충남 규제지도 조사 및 분석결과 알림

1. '16.7.26. 대한상공회의소 규제개혁 컨설팅관련 자료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15년 충청남도 규제지도 조사·분석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시군에서는 미흡한 지표에 대해서 9월 말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5년도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친화성 부문 지표분석 보기  
- 대한상공회의소(<http://bizmap.korcham.net>)>경제활동친화성 분석>분석지표

3. 아울러, '16년도 전국규제지도 등급은 행정자치부 「'17년('16년 실적) 지방 규제개혁 평가」에 반영되오니, 10월에 예정된 전국규제지도 작성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2015년도 충남 규제지도 분석자료 1부. 끝.

## 충청남도지사

수신자 천안시장(정책기획관), 공주시장(기획담당관), 보령시장(기획감사실장), 아산시장(정책기획담당관), 서산시장(기획감사담당관), 논산시장(예산담당관), 계룡시장(기획감사실장), 당진시장(감사법무담당관), 금산군수(기획감사실장), 부여군수(미래전략담당관), 서천군수(정책기획실장), 청양군수(기획감사실장), 홍성군수(기획감사실장), 예산군수(총무과장), 태안군수(기획감사실장)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교육법무담당	전결 2016. 8. 2. 관
협조자	주무관		
시행	교육법무담당관-10225 (2016. 8. 2.)	접수	기획감사실-4901 (2016. 8. 2.)
우 32255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충남대로 21, 충남도청 본관6층 / <a href="http://www.chungnam.net">http://www.chungnam.net</a> (603호) 교육법무담당관		
전화번호	041-635-3237	팩스번호	041-635-3038 / <a href="mailto:bk0305@korea.kr">bk0305@korea.kr</a> / 부분공개(5)

규제개혁이라 쓰고 일자리 창출이라 읽는다

#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89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개정 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내용에 따라 우리시 사회복지시설인 노인복지회관의 명칭 변경 및 위탁계약기간 변경 등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제명, 목적(안 제1조)
  -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위치(안 제2조)
  - 도로명 주소 변경(동금암길 18 → 금암로 182)
- 복지회관 위탁기간 변경 및 계약기간 갱신내용 추가(안 제4조)
  - (현행)위탁기간 3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기간 연장 가능
  - (개정)위탁기간 5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 갱신 가능

○ 복지회관 사용료 변경(안 제7조)

구 분	현 행	개 정
사용료	일반인 사용 시 징수	복지회관 자체규정에 따라 징수
면 제	공익상 필요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면제기준 추가(제7조제2항제1호~제3호)
반환기준	미반환 원칙,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반환	반환기준 추가(제7조제3항제1호~제5호)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사항 :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 8. 31. ~ 9. 20.(제출의견 반영)

2) 입법예고결과요약서 : 붙임 3.

3)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4.(원안동의)

##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계룡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노인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으로 한다.

제2조 중 “노인복지회관(이하 “복지회관”)”을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으로, “동금암길 18”을 “금암로 182”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복지회관은”을 “복지관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위탁기간을 연장 할”을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로 한다.

제5조제1항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자체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100% 반환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4.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반환

제8조제1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제12조 전단 중 “복지회관”을 “복지관”으로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관내 거주자 중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일 때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1. 2. (생략)
3. 그 밖에 복지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복지회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강당 등 시설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5년-----  
-----  
-----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

제5조(이용자의 범위 등) ① 복지관  
-----  
-----.  
-----  
-----.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3. ----- 복지관-----  
-----  
-----

제6조(시설의 사용) ① 복지관-----  
-----  
-----  
-----.

② ----- 복지관  
-----  
-----  
-----.

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사용이 복지회관의 설치목적에 위배된 경우
2. 3. (생략)

제7조(비용의 징수 등)

① 복지회관의 (이하 생략)

② 복지회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및 사용료의 수납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이용·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

-----  
-----.

1. ----- 복지관-----  
-----
2. 3. (현행과 같음)

제7조(비용의 징수 등)

① 복지관의 (이하 생략)

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노인복지관 자체운영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2.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는 경우 : 100% 반환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9일 전 까지 취소신청을 하는 경우 : 1일당 10%씩 90%까지 반환

3.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 : 미반환

4. 노인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100%반환

5.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100%반환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1. 수탁자는 복지회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2.·3. (생략)

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회관의 운영비에 사용해야 한다.

5. (생략)

제11조(지원) 시장은 복지회관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부족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

-----

-.

1. ----- 복지관 -----

-----

-.

2.·3. (현행과 같음)

4. -----

----- 복지관 -----

-----.

5.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원) ----- 복지관 -----

-----

-----

-----

-----.

제12조(자체운영규정) 수탁기관은 조례의 범위 안에서 복지회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운영규정) -----  
----- 복지관 --  
-----  
----- . ---  
-----  
-----.

# 관 계 법 령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9.6., 2012.8.3., 2016.8.3.>

## □ 노인복지법

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2007.8.3.>

1. 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경로당 :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4. 삭제 <2011.6.7.>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관련조항 : 해당사항 없음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른 계약기간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 복지법에 따른 법률용어 변경 등 재정수반사항 해당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함.

### 4. 작성자 :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입법예고결과요약서

- 예고기간 : 2016. 8. 31. ~ 9. 20.(20일간)
- 예고방법 : 市 홈페이지 게재
- 입법예고결과 : 1건 의견 접수(익명의 전화 문의 다수 있었음)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검토의견	처리결과(통보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구, 이○현, 장○호 (계룡시재향군인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개정안 중 경로식당 무료이용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국가유공자를 계속 감면받을수 있도록 요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 경로식당 무료이용조항 현행대로 유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 개정 절차 중으로 확정 후 처리결과 안내 예정</li> </ul>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충남계룡039		
정책명	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사회복지실	
	담당자명	강윤희	전화번호 042-840-233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실)	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로 점검하고, 모든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 '없음' 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계룡시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9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p> <p>사회복지실장 귀하</p>			

#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90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 과정에서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 제4조)
  -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고려사항 포함
  -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추가
- 공립어린이집 위탁계약(안 제10조)
  - 위탁기간을 계약한 날부터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변경
  - 재계약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신설
- 보조금의 지급(안 제15조)
  -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항목 추가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예산사항 : 붙임 2.(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8. 31. ~ 9. 20.(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3.(원안 동의)

##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전부개정 한다.

###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계룡시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영유아 보육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책임을 진다.

#### 제2장 보육정책위원회

제4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의하는 계룡시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3. 어린이집의 비용 수납에 관한 사항
4. 농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시장이 법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원의 구성 비율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⑤ 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육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그 일시,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사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고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영유아보육정책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계룡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0조2의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특정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 제3장 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제8조(설치)** 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고려하여 공립어린이집(이하 이 장에서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명칭은 계룡상록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은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르며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위탁기간은 계약한 날부터 5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④ 재위탁기간 만료 후 다시 위탁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사항과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물과 장비,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⑤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중이더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받았을 때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제15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4.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자는 위탁취소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④ 수탁자는 위탁을 취소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취소 4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① 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채용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의 임면은 시장이 한다. 다만, 법인이나 단체 등이 수탁자로 결정된 때에는 수탁자가 임면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임면사항을 임면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태를 정기점검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면 수탁자에게 문서로 시정조치를 명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도·감독 결과는 재위탁에 반영할 수 있다.

## 제4장 보조금의 지급 등

**제15조(보조금의 지급)**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3.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등 복지증진비
4. 어린이집 비품 및 교재·교구비
5. 영유아의 급·간식비, 안전·위생·영양기능을 높이기 위한 비용
6. 어린이집 냉·난방비
7. 보육교직원 역량강화 및 사기진작을 위한 교육 및 행사비용
8.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보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법 제4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 제5장 보칙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부 지침, 보조금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계룡시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육정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 관 계 법 령

##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 □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두는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이하 "중앙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2.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을 담당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회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7조(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의 개발에 관한 사항
  3. 법 제3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제도에 관한 사항
- 3의2. 삭제
4. 그 밖에 보육 관련 업무의 위탁 등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및 이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 및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다만,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육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은 제외한다.
  4.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법 제23조제1항 및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의 실시 위탁에 관한 사항
  6. 법 제38조에 따른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9. 법 제52조에 따른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유서

2. 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어린이집의 원장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⑨ 어린이집의 운영 위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립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 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별표 8의2 내용 발췌」

#### 1. 일반기준

가. 공개경쟁을 통해 최초로 선정하여 신규 위탁하는 경우 개원 예정일 6개월 전까지 선정한다.

나. 위탁과 관련한 모든 절차, 방법 및 심의 결과는 공개한다. 이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재정수반요인

- 관련조항 : 안 제19조(보조금의 지급)
  - 어린이집 냉·난방비 항목 추가

### 2. 미첨부 근거 규정

-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계룡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미첨부함.

### 4. 작성자 : 사회복지실장 박수정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충남계룡038		
정책명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사회복지실	
	담당자명	송보련	전화번호 042-840-234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20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사회복지실)	○ 제3조(구성)에서 위촉직 위원의 성별균형참여에 대해 자체개선안 기재 - 위촉직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자체개선안에 동의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9월 28일			
<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			
사회복지실장 귀하			

## 공립 「계룡상록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의 안 번 호	제1191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제안사유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및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위탁법인의 재 위탁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 동안의 시설운영, 원장의 전문성, 운영계획, 운영체의 공신력 등 객관적인 심사를 통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사무 위임조례」제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자치사무를 재계약 하고자 할 때는 위탁만료일 50일 전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함에 따른 사항임.

### 2. 주요내용

#### ○ 재위탁(계약) 시설

- 시 설 명 : 계룡상록어린이집
- 위    치 : 계룡시 금암로 176
- 연 면 적 : 352.29m<sup>2</sup>(108평) / 규모 : 지하1층, 지상2층
- 이용정원 : 58명(현원 58명)
- 주요내용 : 우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질 좋은 보육 프로그램 제공

#### ○ ○ 위탁기간 : 2017. 1. 1. ~ 2019. 12. 31.(3년)

\* 단, 계룡시영유아보육조례 개정 이후 재계약 시 위탁기간은 2017. 1. 1. ~ 2021. 12. 31.(5년)으로 한다.

○ ○ 재계약 운영법인

- 위탁법인 : 학)건양학원
- 대표자 : 구 본 정 / 원 장 : 박 선 화

○ 그 동안 위탁현황

- 최초 위탁 공개모집 학)건양학원 2008.1.1 ~ 2010.12.31.
- 1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학)건양학원 2011. 1. 1 ~ 2013. 12. 31.
- 2차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공개모집 학)건양학원 2014. 1. 1 ~ 2016. 12. 31.

○ 운영비 지원액('15년 결산기준) : 210,000천원

○ 그 동안 주요성과

-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학부모의 신뢰도가 높은 시설로 평가
- 입소대기자 및 정원충족률이 높아 공립어린이집으로의 위상 유지
- 우수한 성적으로 평가인증 통과 및 부모모니터링 실사 시 고득점 획득
- 최초 개원 시 부터 지도·점검 지적사항 全無

○ 향후 추진계획

-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재위탁 심사” : 11월초
- ※ 심사점수 7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공개모집)
- 재계약 체결 : 11월말

### 3. 관련법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어린이집의 원장과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

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 할 수 있다.
- ⑧ 수탁자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어린이집의 원장이나, 어린이집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계룡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14조 (위탁계약)**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 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동일수탁자와 재계약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2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출자	계룡시장

## 1. 개정이유

- 「중앙-지방 간 방역체계 개편」에 따른 지자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 하여 감염병 전담인력 확충

※ 「지자체 감염병 대응 조직인력 보강지침」(행정자치부, 2016.8.10.)

## 2. 주요내용

- 정원의 총수(안 제28조)

- (현행) 341명 → (개정) 342명(증 1명, 보건·의료 및 행정)

- 공무원 직급별 정원 조정(별표 4)

구분	계	일반직	별정직	지도직	연구직	정무직	비고
정원	현행	341	328	1	10	1	1
	조정	342	329	1	10	1	1
	증감	+1	+1	-	-	-	-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나. 예산사항 : 붙임 2.(비용추계서)

다.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16. 8. 24. ~ 9. 13.(제출의견 없음)

2) 성별영향분석평가 :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생략(행정업무 처리절차 등에 해당)

계룡시조례 제        호

##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룡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341명”을 “342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329명”을 “330명”으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b>342</b>	<b>330</b>				<b>12</b>
정무직계		<b>1</b>	<b>1</b>				-
시 장		<b>1</b>	<b>1</b>	-	-	-	-
일반직계		<b>329</b>	<b>317</b>				<b>12</b>
4급		<b>1</b>	<b>1</b>	-	-	-	-
4~5급		<b>3</b>	<b>2</b>	<b>1</b>	-	-	-
5급		<b>18</b>	<b>10</b>	-	<b>2</b>	<b>4</b>	<b>2</b>
6급 이하 계		<b>306</b>	<b>296</b>				<b>10</b>
전문경력관 계		<b>1</b>	<b>1</b>				-
별정직계		<b>1</b>	<b>1</b>				-
6급 상당 이하 계		<b>1</b>	<b>1</b>				-
연구직계		<b>1</b>	<b>1</b>				-
연구관		-	-	-	-	-	-
연구사		<b>1</b>	<b>1</b>				-
지도직계		<b>10</b>	<b>10</b>				-
지도관		<b>1</b>	-	<b>1</b>	-	-	-
지도사		<b>9</b>	<b>9</b>				-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개																																																																																																																																																																																																																																																																																																								
<p>제28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b>341</b>명으로 하고,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b>329</b>명</p> <p>2. (생략)</p> <p><b>[별표4]</b> 계룡시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p>	<p>제28조(정원의 총수) ----- ----- <b>342</b>명 ----- -----</p> <p>1. ----- : <b>330</b>명</p> <p>2. (현행과 같음)</p> <p><b>[별표4]</b> 계룡시지방공무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0조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colspan="4">집행기관</th> <th rowspan="2">의회 사무기구</th> </tr> <tr> <th>본청</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4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329</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2</b></td> </tr> <tr> <td>정무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시 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28</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316</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2</b></td> </tr> <tr> <td>4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4~5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5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8</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d style="text-align: center;"><b>4</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5</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295</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r> <tr> <td>전문경력관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별정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9</b></td> <td style="text-align: center;"><b>9</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b>341</b>	<b>329</b>				<b>12</b>	정무직계		<b>1</b>	<b>1</b>				<b>-</b>	시 장		<b>1</b>	<b>1</b>	<b>-</b>	<b>-</b>	<b>-</b>	<b>-</b>	일반직계		<b>328</b>	<b>316</b>				<b>12</b>	4급		<b>1</b>	<b>1</b>	<b>-</b>	<b>-</b>	<b>-</b>	<b>-</b>	4~5급		<b>3</b>	<b>2</b>	<b>1</b>	<b>-</b>	<b>-</b>	<b>-</b>	5급		<b>18</b>	<b>10</b>	<b>-</b>	<b>2</b>	<b>4</b>	<b>2</b>	6급 이하 계		<b>305</b>	<b>295</b>				<b>10</b>	전문경력관계		<b>1</b>	<b>1</b>				<b>-</b>	별정직계		<b>1</b>	<b>1</b>				<b>-</b>	6급 상당 이하 계		<b>1</b>	<b>1</b>				<b>-</b>	연구직계		<b>1</b>	<b>1</b>				<b>-</b>	연구관		<b>-</b>	<b>-</b>	<b>-</b>	<b>-</b>	<b>-</b>	<b>-</b>	연구사		<b>1</b>	<b>1</b>	<b>-</b>	<b>-</b>	<b>-</b>	<b>-</b>	지도직계		<b>10</b>	<b>10</b>				<b>-</b>	지도관		<b>1</b>	<b>-</b>	<b>1</b>	<b>-</b>	<b>-</b>	<b>-</b>	지도사		<b>9</b>	<b>9</b>	<b>-</b>	<b>-</b>	<b>-</b>	<b>-</b>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직급별</th> <th rowspan="2">기관별</th> <th rowspan="2">총 계</th> <th colspan="4">집행기관</th> <th rowspan="2">의회 사무기구</th> </tr> <tr> <th>본청</th> <th>직속기관</th> <th>사업소</th> <th>면·동</th> </tr> </thead> <tbody> <tr> <td>총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42</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330</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2</b></td> </tr> <tr> <td>정무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시 장</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일반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29</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317</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2</b></td> </tr> <tr> <td>4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4~5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5급</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8</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d style="text-align: center;"><b>4</b></td> <td style="text-align: center;"><b>2</b></td> </tr> <tr> <td>6급 이하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306</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296</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r> <tr> <td>전문경력관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별정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6급 상당 이하 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연구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직계</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colspan="4" style="text-align: center;"><b>10</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관</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1</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r> <td>지도사</td> <td></td> <td style="text-align: center;"><b>9</b></td> <td style="text-align: center;"><b>9</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d style="text-align: center;"><b>-</b></td> </tr> </tbody> </table>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b>342</b>	<b>330</b>				<b>12</b>	정무직계		<b>1</b>	<b>1</b>				<b>-</b>	시 장		<b>1</b>	<b>1</b>	<b>-</b>	<b>-</b>	<b>-</b>	<b>-</b>	일반직계		<b>329</b>	<b>317</b>				<b>12</b>	4급		<b>1</b>	<b>1</b>	<b>-</b>	<b>-</b>	<b>-</b>	<b>-</b>	4~5급		<b>3</b>	<b>2</b>	<b>1</b>	<b>-</b>	<b>-</b>	<b>-</b>	5급		<b>18</b>	<b>10</b>	<b>-</b>	<b>2</b>	<b>4</b>	<b>2</b>	6급 이하 계		<b>306</b>	<b>296</b>				<b>10</b>	전문경력관계		<b>1</b>	<b>1</b>				<b>-</b>	별정직계		<b>1</b>	<b>1</b>				<b>-</b>	6급 상당 이하 계		<b>1</b>	<b>1</b>				<b>-</b>	연구직계		<b>1</b>	<b>1</b>				<b>-</b>	연구관		<b>-</b>	<b>-</b>	<b>-</b>	<b>-</b>	<b>-</b>	<b>-</b>	연구사		<b>1</b>	<b>1</b>	<b>-</b>	<b>-</b>	<b>-</b>	<b>-</b>	지도직계		<b>10</b>	<b>10</b>				<b>-</b>	지도관		<b>1</b>	<b>-</b>	<b>1</b>	<b>-</b>	<b>-</b>	<b>-</b>	지도사		<b>9</b>	<b>9</b>	<b>-</b>	<b>-</b>	<b>-</b>	<b>-</b>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b>341</b>	<b>329</b>				<b>12</b>																																																																																																																																																																																																																																																																																																		
정무직계		<b>1</b>	<b>1</b>				<b>-</b>																																																																																																																																																																																																																																																																																																		
시 장		<b>1</b>	<b>1</b>	<b>-</b>	<b>-</b>	<b>-</b>	<b>-</b>																																																																																																																																																																																																																																																																																																		
일반직계		<b>328</b>	<b>316</b>				<b>12</b>																																																																																																																																																																																																																																																																																																		
4급		<b>1</b>	<b>1</b>	<b>-</b>	<b>-</b>	<b>-</b>	<b>-</b>																																																																																																																																																																																																																																																																																																		
4~5급		<b>3</b>	<b>2</b>	<b>1</b>	<b>-</b>	<b>-</b>	<b>-</b>																																																																																																																																																																																																																																																																																																		
5급		<b>18</b>	<b>10</b>	<b>-</b>	<b>2</b>	<b>4</b>	<b>2</b>																																																																																																																																																																																																																																																																																																		
6급 이하 계		<b>305</b>	<b>295</b>				<b>10</b>																																																																																																																																																																																																																																																																																																		
전문경력관계		<b>1</b>	<b>1</b>				<b>-</b>																																																																																																																																																																																																																																																																																																		
별정직계		<b>1</b>	<b>1</b>				<b>-</b>																																																																																																																																																																																																																																																																																																		
6급 상당 이하 계		<b>1</b>	<b>1</b>				<b>-</b>																																																																																																																																																																																																																																																																																																		
연구직계		<b>1</b>	<b>1</b>				<b>-</b>																																																																																																																																																																																																																																																																																																		
연구관		<b>-</b>	<b>-</b>	<b>-</b>	<b>-</b>	<b>-</b>	<b>-</b>																																																																																																																																																																																																																																																																																																		
연구사		<b>1</b>	<b>1</b>	<b>-</b>	<b>-</b>	<b>-</b>	<b>-</b>																																																																																																																																																																																																																																																																																																		
지도직계		<b>10</b>	<b>10</b>				<b>-</b>																																																																																																																																																																																																																																																																																																		
지도관		<b>1</b>	<b>-</b>	<b>1</b>	<b>-</b>	<b>-</b>	<b>-</b>																																																																																																																																																																																																																																																																																																		
지도사		<b>9</b>	<b>9</b>	<b>-</b>	<b>-</b>	<b>-</b>	<b>-</b>																																																																																																																																																																																																																																																																																																		
직급별	기관별	총 계	집행기관				의회 사무기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총 계		<b>342</b>	<b>330</b>				<b>12</b>																																																																																																																																																																																																																																																																																																		
정무직계		<b>1</b>	<b>1</b>				<b>-</b>																																																																																																																																																																																																																																																																																																		
시 장		<b>1</b>	<b>1</b>	<b>-</b>	<b>-</b>	<b>-</b>	<b>-</b>																																																																																																																																																																																																																																																																																																		
일반직계		<b>329</b>	<b>317</b>				<b>12</b>																																																																																																																																																																																																																																																																																																		
4급		<b>1</b>	<b>1</b>	<b>-</b>	<b>-</b>	<b>-</b>	<b>-</b>																																																																																																																																																																																																																																																																																																		
4~5급		<b>3</b>	<b>2</b>	<b>1</b>	<b>-</b>	<b>-</b>	<b>-</b>																																																																																																																																																																																																																																																																																																		
5급		<b>18</b>	<b>10</b>	<b>-</b>	<b>2</b>	<b>4</b>	<b>2</b>																																																																																																																																																																																																																																																																																																		
6급 이하 계		<b>306</b>	<b>296</b>				<b>10</b>																																																																																																																																																																																																																																																																																																		
전문경력관계		<b>1</b>	<b>1</b>				<b>-</b>																																																																																																																																																																																																																																																																																																		
별정직계		<b>1</b>	<b>1</b>				<b>-</b>																																																																																																																																																																																																																																																																																																		
6급 상당 이하 계		<b>1</b>	<b>1</b>				<b>-</b>																																																																																																																																																																																																																																																																																																		
연구직계		<b>1</b>	<b>1</b>				<b>-</b>																																																																																																																																																																																																																																																																																																		
연구관		<b>-</b>	<b>-</b>	<b>-</b>	<b>-</b>	<b>-</b>	<b>-</b>																																																																																																																																																																																																																																																																																																		
연구사		<b>1</b>	<b>1</b>	<b>-</b>	<b>-</b>	<b>-</b>	<b>-</b>																																																																																																																																																																																																																																																																																																		
지도직계		<b>10</b>	<b>10</b>				<b>-</b>																																																																																																																																																																																																																																																																																																		
지도관		<b>1</b>	<b>-</b>	<b>1</b>	<b>-</b>	<b>-</b>	<b>-</b>																																																																																																																																																																																																																																																																																																		
지도사		<b>9</b>	<b>9</b>	<b>-</b>	<b>-</b>	<b>-</b>	<b>-</b>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정원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직간의 균형있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종류별로 정원책정기준에 따라 정원을 책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이하)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감염병 전담 행정인력 확충·증원으로 인건비 증가
- 조례안 제28조, 제30조

## 2. 비용 추계 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전담 대응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증원되는 정원임
- 기준 호봉은 9급의 경우 1호봉으로 가정함.

### 나. 추계 결과

- 인건비 (9급 : 증 1명)

계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 등
<b>29,918</b>	<b>16,156</b>	<b>4,174</b>	<b>1,560</b>	<b>1,615</b>	<b>897</b>	<b>1,260</b>	<b>1,481</b>	<b>2775</b>

※ 기준인건비 포함 경비('17년 지방공무원 보수표 적용)

구 분(예산과목)	비용소요 (천원)	산 출 근 거
총 계	<b>29,918</b>	
○ 인건비	<b>24,402</b>	
- 기본급	<b>16,156</b>	• 1,346,400원×12월×1명 = 16,156,800원
- 수 당	<b>4,174</b>	• 시간외: 7,830원×43시간×12월×1명 = 4,040,280원 • 정근수당 :1,346,400원×5%×2회/년×1명 = 134,640원 • 정근수당가산금 • 정근수당추가가산금
- 정액급식비	<b>1,560</b>	• 130,000원/월×1명×12월 = 1,560,000원
- 명절휴가비	<b>1,615</b>	• (1,346,400원×60%)×2회×1명 = 1,615,680원
- 연가보상비	<b>897</b>	• (1,346,400원/월*1/30일)×20일×1명 = 897,600원
○ 물건비	<b>1,260</b>	
- 직급보조비	<b>1,260</b>	• 105,000원/1인,월×12월×1명 = 1,260,000원
○ 이전경비	<b>4,256</b>	
- 성과상여금	<b>1,481</b>	• 1,346,400원×110%×1명 = 1,481,040원
- 연금부담금	<b>1,900</b>	• 27,143,000원×7.0% = 1,900,010원
- 국민건강보험금	<b>875</b>	• (27,143,000원×2.90%)+(1,511,189원×6.55%) = 875,336원

## 다.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7년)	2차년도 (2018년)	3차년도 (2019년)	4차년도 (2020년)	5차년도 (2021년)	비고
세 입	29,918	35,287	36,767	38,229	39,495	
· 교부세	29,918	35,287	36,767	38,229	39,495	
세 출	29,918	35,287	36,767	38,229	39,495	
· 인건비	24,402	25,602	26,802	28,002	29,202	
· 물건비	1,260	1,260	1,260	1,260	1,260	
· 이전경비	4,256	8,425	8,705	8,967	9,033	

## 라. 재원조달방안

- '17년 기준인건비 산정 시, 인력 보강분에 대한 인건비 증액 예정

**3. 작성자 : 자치행정과장 김 덕 영**

##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 동의안

의안번호	제1193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출자	계룡시장

### □ 제출사유

-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해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출연금 지원에 대한 계룡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함

### □ 주요내용

#### 1. (재)계룡시애향장학회 운영 개요

- 설립일 : 2006. 5. 4. 재단법인 설립
- 운영근거 :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장학기금 : 2,694,119,980원
- 장학금 지원현황(2007년~2016년) : 506명 / 400,300천원

#### 2. 2017년 출연금 지원 계획 : 250,000천원

- 기본재산 적립 및 장학금 활용 : 200,000천원
- 우수 대학생 국외연수 사업 : 50,000천원
- ※ 출연금 총 지원액(설립~2016년) : 2,650,000천원

#### 3. 기대효과

- ‘학업 우수’ 및 ‘예체능 특기’ 학생 대상 장학금 지원
- 국외연수(어학, 직업탐방)를 통한 선진국 교육 인프라 활용  
⇒ 지역 인재 발굴·육성, 교육도시로의 발전 도모

## 관 련 법 규

###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 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 「계룡시 애향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개인 및 단체 등 민간 기탁금
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4. 기타 수입금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번호	제1194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출자	계룡시장

## 1. 제안사유

- 공공청사(신도안면사무소 및 신도안보건지소) 부지매입 및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2건의 공유재산 취득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요청함.

## 2. 관리계획 내역

###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안건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건 (동,필지)	수량	재산가액	
계				1		1,246,371	
1	공공청사 부지 매입	취득	토지	1 (2필지)	3,164.1	1,246,371	

### ○ 특별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안건명	구분	재산현황				비고
			종류	건 (동,필지)	수량	재산가액	
계				1		19,518,925	
1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취득	토지	1 (152필지)	170,873	19,518,925	

### 3. 주요내용

#### ① 「공공청사(신도안면사무소 및 신도안면보건지소) 부지」 매입

가. 매입기간 : 2017년 ~ 2021년(5년간) \* 5년 분할납부

나. 위 치 : 신도안면 남선리 1233번지 외 1필지(3,164.1㎡)

(단위 : ㎡,천원)

재산의 표시		지목	면적	재산가액		비고
소재지	지번			㎡당(원)	예정가격	
계	2필지		3,164.1		1,246,371	
신도안면 남선리	1233	대지	2,105.9	421,000	886,583	국방부 소유
	1232	대지	1,058.2	340,000	359,788	

※ 국방부(충청시설단)에서 의뢰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금액

다. 면적 : 3,164.1㎡

라. 부지매입비 : 1,246백만원(자체재원 100%)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자체재원	1,246	249.2	249.2	249.2	249.2	249.2	

마. 사업목적

- 국방부 소유(現 신도안면사무소·신도안면보건지소) 부지 ‘무상 사용 허가 갱신 불가에 따른 부지매입비 확보’로
- ‘市 통합적 균형발전 계획 수립’ 및 ‘신도안면 지역 주민의 선진 복지 행정 맞춤형서비스 제공’과
- ‘民 중심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공공청사 관리’를 위하여 매입 추진

②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

가. 사업기간 : 2012~2016년

나. 위 치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입암길 일원

(단위 : m<sup>2</sup>, 천원)

연번	부동산 소재 (계룡시 두마면)	지목 (용도)	면적 (m <sup>2</sup> )	공유재산			비고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	등기일	
			170,873	19,518,925			
1	입암리 242-7	전	3,091	308,481	2014-01-14	2014-01-27	
2	입암리 242-8	전	1,020	102,816	2014-01-14	2014-01-27	
3	입암리 43-3	대	62	20,253	2013-04-23	2013-04-18	
4	입암리 45-2	전	489	96,822	2014-07-15	2014-07-22	
5	입암리 45-3	전	143	28,314	2014-07-15	2014-07-22	
6	왕대리 307-6	도로	4	212	2014-07-15	2014-07-22	
7	왕대리 308-11	도로	121	14,358	2014-02-28	2014-02-21	
8	왕대리 314	답	171	32,604	2013-02-27	2013-01-28	
9	왕대리 314-1	답	244	46,522	2013-02-27	2013-01-28	
10	왕대리 315	답	266	51,949	2014-03-17	2014-04-01	
11	입암리 4	전	776	107,088	2013-07-11	2013-07-03	
12	입암리 5	전	403	54,404	2013-07-19	2013-07-10	
13	입암리 6	전	1,844	275,370	2013-12-06	2013-12-02	
14	입암리 8	답	51	7,208	2013-03-15	2013-02-22	
15	입암리 9	답	217	31,486	2014-01-14	2014-01-27	
16	입암리 10	답	169	25,631	2013-03-15	2013-02-22	
17	입암리 11	전	1,345	215,670	2014-01-14	2014-01-27	
18	입암리 12	답	1,325	212,463	2014-01-14	2014-01-27	
19	입암리 13	답	553	88,673	2014-01-14	2014-01-27	
20	입암리 14-2	전	1,148	180,236	2013-04-15	2013-04-02	
21	입암리 16	답	1,071	168,147	2014-06-03	2014-05-26	
22	입암리 17	전	1,859	299,484	2014-01-14	2014-01-27	
23	입암리 18	답	1,483	234,808	2013-04-30	2013-04-18	
24	입암리 19-1	답	2,677	431,264	2014-01-14	2014-01-27	
25	입암리 19-2	도로	245	12,911	2014-01-14	2014-01-27	
26	입암리 19-3	답	1,980	327,195	2014-01-14	2014-01-27	
27	입암리 20-1	묘지	555	43,290	2013-09-04	2013-08-06	
28	입암리 20-2	도로	40	1,040	2014-07-15	2014-07-22	
29	입암리 21	전	2,327	358,358	2013-02-27	2013-02-07	
30	입암리 22-1	창고용지	2,007	440,202	2013-01-16	2013-01-07	

연번	부동산 소재 (계룡시 두마면)	지목 (용도)	면적 (㎡)	공유재산			비고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	등기일	
31	입암리 22-7	도로	13	960	2014-01-14	2014-01-27	
32	입암리 22-8	창고용지	2,008	459,631	2014-01-14	2014-01-27	
33	입암리 23	전	383	54,386	2013-01-24	2013-01-11	
34	입암리 24	전	684	100,308	2014-01-14	2014-01-27	
35	입암리 24-1	전	1,091	158,304	2014-01-14	2014-01-27	
36	입암리 25	전	383	59,326	2014-01-14	2014-01-27	
37	입암리 26	전	314	44,807	2014-01-14	2014-01-27	
38	입암리 26-1	전	2,132	299,972	2014-01-14	2014-01-27	
39	입암리 26-2	전	3,927	425,883	2014-01-14	2014-01-27	
40	입암리 27	대	4,562	913,511	2014-01-14	2014-01-27	
41	입암리 28	창고용지	2,512	558,166	2014-01-14	2014-01-27	
42	입암리 28-1	대	630	159,327	2014-01-14	2014-01-27	
43	입암리 28-2	도로	12	1,002	2014-01-14	2014-01-27	
44	입암리 29-1	대	231	56,903	2013-12-30	기존계룡시소유	잡종재산 협의매입
45	입암리 29-4	임야	7,408	279,034	2013-02-06	2013-01-23	
46	입암리 29-6	임야	441	17,022	2014-01-14	2014-01-27	
47	입암리 31-1	답	588	111,720	2013-04-15	2013-04-02	
48	입암리 32-1	대	430	112,875	2014-07-15	2014-07-22	
49	입암리 32-5	답	195	43,680	2014-07-15	2014-07-22	
50	입암리 34-1	대	579	150,887	2014-01-14	2014-01-27	
51	입암리 34-11	답	523	116,942	2014-01-14	2014-01-27	
52	입암리 34-2	답	659	150,911	2014-08-20	2014-08-11	
53	입암리 34-3	도로	56	4,666	2013-02-27	2013-02-07	
54	입암리 34-10	답	186	42,389	2014-01-14	2014-01-27	
55	입암리 40	답	453	109,324	2013-04-15	2013-04-08	
56	입암리 41	대	361	117,325	2013-04-30	2013-04-25	
57	입암리 41-2	답	141	32,665	2013-04-30	2013-04-25	
58	입암리 43	답	1,664	392,704	2014-07-15	2014-07-22	
59	입암리 44-1	답	2,178	506,748	2013-02-06	2013-01-23	
60	입암리 44-4	도로	69	5,290	2013-02-06	2013-01-23	
61	입암리 45	대	590	192,733	2013-04-23	2013-04-18	
62	입암리 45-1	대	28	9,146	2013-04-23	2013-04-18	
63	입암리 46	전	674	123,544	2014-01-14	2014-01-27	
64	입암리 46-5	도로	2	117	2014-07-15	2014-07-22	
65	입암리 46-8	도로	44	2,625	2014-07-15	2014-07-22	
66	입암리 47	공장용지	1,656	550,371	2014-01-14	2014-01-27	
67	입암리 47-2	도로	115	12,609	2014-01-14	2014-01-27	

연번	부동산 소재 (계룡시 두마면)	지목 (용도)	면적 (㎡)	공유재산			비고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	등기일	
68	입암리 48	전	215	39,201	2013-04-15	2013-04-02	
69	입암리 48-1	전	66	10,318	2013-05-22	2013-05-16	
70	입암리 48-3	답	693	124,740	2013-04-15	2013-04-02	
71	입암리 49	답	3,422	825,842	2013-03-26	2013-03-19	
72	입암리 49-3	공장용지	26	8,641	2014-01-14	2014-01-27	
73	입암리 149-2	전	275	37,400	2013-04-23	2013-04-18	
74	입암리 149-3	전	16	1,203	2014-07-15	2014-07-22	
75	입암리 150-1	전	532	68,832	2014-07-15	2014-07-22	
76	입암리 150-2	임야	446	26,280	2014-07-15	2014-07-22	
77	입암리 150-3	전	460	67,770	2014-07-15	2014-07-22	
78	입암리 151	답	605	78,117	2014-07-15	2014-07-22	
79	입암리 152-3	답	857	123,836	2014-07-15	2014-07-22	
80	입암리 153-4	답	372	54,684	2014-03-17	2014-04-01	
81	입암리 154-4	답	859	125,986	2013-01-16	2013-01-07	
82	입암리 157-8	답	3	440	2014-03-05	2014-02-27	
83	입암리 198-1	답	415	61,973	2013-06-21	2013-06-14	
84	입암리 198-4	답	399	59,584	2013-06-21	2013-06-14	
85	입암리 199-1	답	358	54,756	2014-01-14	2014-01-27	
86	입암리 199-4	답	2,290	350,255	2014-01-14	2014-01-27	
87	입암리 200	답	4,423	535,183	2013-06-14	2013-06-10	
88	입암리 201-1	답	118	13,452	2013-06-21	2013-06-14	
89	입암리 201-3	답	1,280	145,920	2013-06-21	2013-06-11	
90	입암리 201-2	답	1,855	211,470	2013-04-19	2013-04-11	
91	입암리 202-1	답	1,653	214,890	2014-07-15	2014-07-22	
92	입암리 203-2	전	82	6,823	2014-03-17	2014-04-01	
93	입암리 219-1	답	245	28,093	2013-04-15	2013-03-25	
94	입암리 219-2	전	843	96,664	2013-04-15	2013-03-25	
95	입암리 220	전	846	93,624	2013-01-24	2013-01-11	
96	입암리 221-1	대	55	13,513	2014-01-14	2014-01-27	
97	입암리 221-5	대	605	148,648	2014-01-14	2014-01-27	
98	입암리 221-3	전	130	19,847	2014-08-13	2014-08-04	
99	입암리 221-7	전	2,714	411,734	2014-01-14	2014-01-27	
100	입암리 225-1	답	440	66,000	2014-08-13	2014-08-04	
101	입암리 225-3	답	129	19,730	2014-01-14	2014-01-27	
102	입암리 226-1	답	600	90,000	2014-08-13	2014-08-04	
103	입암리 226-6	답	93	13,919	2014-04-02	2014-03-19	
104	입암리 228-1	대	516	125,697	2014-01-14	2014-01-27	
105	입암리 228-3	답	127	19,805	2014-01-14	2014-01-27	

연번	부동산 소재 (계룡시 두마면)	지목 (용도)	면적 (㎡)	공유재산			비고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	등기일	
106	입암리 229	임야	337	19,883	2014-07-15	2014-07-22	
107	입암리 230	전	245	25,643	2013-04-15	2013-04-08	
108	입암리 231	전	1,319	161,643	2014-01-14	2014-01-27	
109	입암리 232	전	106	9,987	2014-01-14	2014-01-27	
110	입암리 233	전	641	64,741	2013-04-19	2013-04-02	
111	입암리 233-2	전	518	54,390	2014-07-15	2014-07-22	
112	입암리 233-3	전	1,403	136,558	2013-04-19	2013-04-02	
113	입암리 234	전	714	74,970	2014-01-14	2014-01-27	
114	입암리 235	전	1,256	149,087	2014-01-14	2014-01-27	
115	입암리 236-1	대	371	78,528	2013-08-06	2013-07-29	
116	입암리 236-2	대	641	138,883	2013-04-15	2013-04-08	
117	입암리 236-3	전	790	81,291	2014-01-14	2014-01-27	
118	입암리 236-4	대	475	103,740	2014-01-14	2014-01-27	
119	입암리 236-5	대	172	37,266	2013-05-22	2013-05-16	
120	입암리 237-1	대	188	37,064	2014-01-14	2014-01-27	
121	입암리 237-2	대	169	35,261	2014-01-14	2014-01-27	
122	입암리 238	대	797	167,370	2013-05-30	2013-05-28	
123	입암리 239	전	367	37,311	2013-04-15	2013-04-08	
124	입암리 239-1	전	1,131	114,985	2013-04-15	2013-04-08	
125	입암리 240	전	208	20,966	2014-01-14	2014-01-27	
126	입암리 241	전	579	59,260	2014-01-14	2014-01-27	
127	입암리 242	전	598	60,198	2013-04-15	2013-04-08	
128	입암리 242-1	전	65	6,487	2014-01-14	2014-01-27	
129	입암리 242-10	임야	13	468	2013-02-06	2013-01-23	
130	입암리 243	하천	653	85,536	2014-07-15	2014-07-22	
131	입암리 244	전	31	4,200	2014-07-15	2014-07-22	
132	입암리 1-3	임야	2,463	133,494	2014-01-14	2014-01-27	
133	입암리 1-11	임야	8,198	377,108	2013-05-10	2013-05-03	
134	입암리 1-10	임야	1,306	72,265	2013-03-29	2013-03-25	
135	입암리 2-13	임야	2,573	95,586	2014-01-14	2014-01-27	
136	입암리 2-14	임야	605	22,475	2014-01-14	2014-01-27	
137	입암리 2-15	임야	13,359	494,282	2013-04-15	2013-04-02	
138	입암리 2-5	임야	1,884	86,664	2014-01-14	2014-01-27	
139	입암리 2-7	임야	595	27,161	2014-01-14	2014-01-27	
140	입암리 2-10	임야	1,884	84,309	2014-01-14	2014-01-27	
141	입암리 5-1	임야	12,111	415,810	2013-03-15	2013-02-22	
142	입암리 6	임야	9,917	373,540	2013-01-24	2013-01-11	
143	입암리 8-1	임야	1,040	37,540	2014-01-14	2014-01-27	

연번	부동산 소재 (계룡시 두마면)	지목 (용도)	면적 (㎡)	공유재산			비고
				취득금액 (천원)	취득일	등기일	
144	입암리 16-3	임야	4,634	203,166	2014-01-14	2014-01-27	
145	입암리 16-1	임야	132	6,248	2013-03-29	2013-03-25	
146	입암리 34-6	답	24	5,196	2014-08-13	2014-08-04	
147	입암리 33-2	답	12	2,598	2014-08-20	2014-08-11	
148	입암리 37-3	답	15	2,017	2015-07-07	2015-07-02	
149	입암리 35	답	200	26,900	2015-07-07	2015-07-02	
150	왕대리 308-12	도로	642	98,226	2016-04-05	2016-03-02	
151	입암리 29-7	대	727	175,934	-	-	
152	입암리 29-8	대	94	22,748	-	-	

다. 면 적 : 193,730㎡(매입 170,873㎡, 국공유지 등 22,857㎡)

라. 총사업비 : 457억원(보상비 246억원, 공사·용역비 등 211억원)

총 사업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45,740	12,500	11,800	9,330	5,370	6,740

마. 사업목적

- 지속발전 가능한 미래전략 첨단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국방과학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통한 국방과학산업 거점지역 육성

#### 4. 의결하여야할 사항

- ① 「공공청사(신도안면사무소 및 신도안보건지소) 부지」 매입
- ②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토지」 매입

- 붙임 1.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취득대상 재산목록 1부
3.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1부
4. 관련법령 1부

#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 총괄표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비고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2 (157)	174,037.1	20,765,296	1 (2)	3,164.1	1,246,371	1 (152)	170,873	19,518,925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2 (157)	174,037.1	20,765,296	1 (2)	3,164.1	1,246,371	1 (152)	170,873	19,518,925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 매각	토지										
		건물										
		기타										
	5. 양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 으로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일반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1 (2)	3,164.1	1,246,371				1 (2)	3,164.1	1,246,371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1 (2)	3,164.1	1,246,371				1 (2)	3,164.1	1,246,371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취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m<sup>2</sup>, 천원)

일련 번호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예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계	토지		2필지 (3,164.1)	1,246,371				
	건물							
	기타							
1	토지	신도안면 남선리 1233	2,105.9	886,583	2017년	토지 매입 (공공청사 부지매입)	자치행정과	
		신도안면 남선리 1232	1,058.2	340,000	~ 2021년			
2	건물							
3	기타							

<특별회계>

(단위 : m<sup>2</sup>, 천원)

구 분		당 초			변 경			합 계			비고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건 수 (동,필지)	수량	금 액		
취 득	계	토지	1 (152)	170,873	19,518,925				1 (152)	170,873	19,518,925	
		건물										
		기타										
	1.매입	토지	1 (152)	170,873	19,518,925				1 (152)	170,873	19,518,925	
		건물										
		기타										
	2.교환 으로 취득	토지										
		건물										
		기타										
	3.기타 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 분	계	토지										
		건물										
		기타										
	4.매각	토지										
		건물										
		기타										
	5.양여	토지										
		건물										
		기타										
	6.교환 처분	토지										
		건물										
		기타										

# 취득대상 재산 목록

회계명 : 특별회계

(단위: m<sup>2</sup>, 천원)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예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170,873	19,518,925				
1	토지	입암리 242-7	3,091	308,481	2014-01-14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부지	지역경제과	
2	토지	입암리 242-8	1,020	102,816	2014-01-14			
3	토지	입암리 43-3	62	20,253	2013-04-23			
4	토지	입암리 45-2	489	96,822	2014-07-15			
5	토지	입암리 45-3	143	28,314	2014-07-15			
6	토지	왕대리 307-6	4	212	2014-07-15			
7	토지	왕대리 308-11	121	14,358	2014-02-28			
8	토지	왕대리 314	171	32,604	2013-02-27			
9	토지	왕대리 314-1	244	46,522	2013-02-27			
10	토지	왕대리 315	266	51,949	2014-03-17			
11	토지	입암리 4	776	107,088	2013-07-11			
12	토지	입암리 5	403	54,404	2013-07-19			
13	토지	입암리 6	1,844	275,370	2013-12-06			
14	토지	입암리 8	51	7,208	2013-03-15			
15	토지	입암리 9	217	31,486	2014-01-14			
16	토지	입암리 10	169	25,631	2013-03-15			
17	토지	입암리 11	1,345	215,670	2014-01-14			
18	토지	입암리 12	1,325	212,463	2014-01-14			
19	토지	입암리 13	553	88,673	2014-01-14			
20	토지	입암리 14-2	1,148	180,236	2013-04-15			
21	토지	입암리 16	1,071	168,147	2014-06-03			
22	토지	입암리 17	1,859	299,484	2014-01-14			
23	토지	입암리 18	1,483	234,808	2013-04-30			
24	토지	입암리 19-1	2,677	431,264	2014-01-14			
25	토지	입암리 19-2	245	12,911	2014-01-14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예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26	토지	입암리 19-3	1,980	327,195	2014-01-14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부지	지역경제과	
27	토지	입암리 20-1	555	43,290	2013-09-04			
28	토지	입암리 20-2	40	1,040	2014-07-15			
29	토지	입암리 21	2,327	358,358	2013-02-27			
30	토지	입암리 22-1	2,007	440,202	2013-01-16			
31	토지	입암리 22-7	13	960	2014-01-14			
32	토지	입암리 22-8	2,008	459,631	2014-01-14			
33	토지	입암리 23	383	54,386	2013-01-24			
34	토지	입암리 24	684	100,308	2014-01-14			
35	토지	입암리 24-1	1,091	158,304	2014-01-14			
36	토지	입암리 25	383	59,326	2014-01-14			
37	토지	입암리 26	314	44,807	2014-01-14			
38	토지	입암리 26-1	2,132	299,972	2014-01-14			
39	토지	입암리 26-2	3,927	425,883	2014-01-14			
40	토지	입암리 27	4,562	913,511	2014-01-14			
41	토지	입암리 28	2,512	558,166	2014-01-14			
42	토지	입암리 28-1	630	159,327	2014-01-14			
43	토지	입암리 28-2	12	1,002	2014-01-14			
44	토지	입암리 29-1	231	56,903	2013-12-30			
45	토지	입암리 29-4	7,408	279,034	2013-02-06			
46	토지	입암리 29-6	441	17,022	2014-01-14			
47	토지	입암리 31-1	588	111,720	2013-04-15			
48	토지	입암리 32-1	430	112,875	2014-07-15			
49	토지	입암리 32-5	195	43,680	2014-07-15			
50	토지	입암리 34-1	579	150,887	2014-01-14			
51	토지	입암리 34-11	523	116,942	2014-01-14			
52	토지	입암리 34-2	659	150,911	2014-08-20			
53	토지	입암리 34-3	56	4,666	2013-02-27			
54	토지	입암리 34-10	186	42,389	2014-01-14			
55	토지	입암리 40	453	109,324	2013-04-15			
56	토지	입암리 41	361	117,325	2013-04-30			
57	토지	입암리 41-2	141	32,665	2013-04-30			
58	토지	입암리 43	1,664	392,704	2014-07-15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예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59	토지	입암리 44-1	2,178	506,748	2013-02-06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부지	지역경제과	
60	토지	입암리 44-4	69	5,290	2013-02-06			
61	토지	입암리 45	590	192,733	2013-04-23			
62	토지	입암리 45-1	28	9,146	2013-04-23			
63	토지	입암리 46	674	123,544	2014-01-14			
64	토지	입암리 46-5	2	117	2014-07-15			
65	토지	입암리 46-8	44	2,625	2014-07-15			
66	토지	입암리 47	1,656	550,371	2014-01-14			
67	토지	입암리 47-2	115	12,609	2014-01-14			
68	토지	입암리 48	215	39,201	2013-04-15			
69	토지	입암리 48-1	66	10,318	2013-05-22			
70	토지	입암리 48-3	693	124,740	2013-04-15			
71	토지	입암리 49	3,422	825,842	2013-03-26			
72	토지	입암리 49-3	26	8,641	2014-01-14			
73	토지	입암리 149-2	275	37,400	2013-04-23			
74	토지	입암리 149-3	16	1,203	2014-07-15			
75	토지	입암리 150-1	532	68,832	2014-07-15			
76	토지	입암리 150-2	446	26,280	2014-07-15			
77	토지	입암리 150-3	460	67,770	2014-07-15			
78	토지	입암리 151	605	78,117	2014-07-15			
79	토지	입암리 152-3	857	123,836	2014-07-15			
80	토지	입암리 153-4	372	54,684	2014-03-17			
81	토지	입암리 154-4	859	125,986	2013-01-16			
82	토지	입암리 157-8	3	440	2014-03-05			
83	토지	입암리 198-1	415	61,973	2013-06-21			
84	토지	입암리 198-4	399	59,584	2013-06-21			
85	토지	입암리 199-1	358	54,756	2014-01-14			
86	토지	입암리 199-4	2,290	350,255	2014-01-14			
87	토지	입암리 200	4,423	535,183	2013-06-14			
88	토지	입암리 201-1	118	13,452	2013-06-21			
89	토지	입암리 201-3	1,280	145,920	2013-06-21			
90	토지	입암리 201-2	1,855	211,470	2013-04-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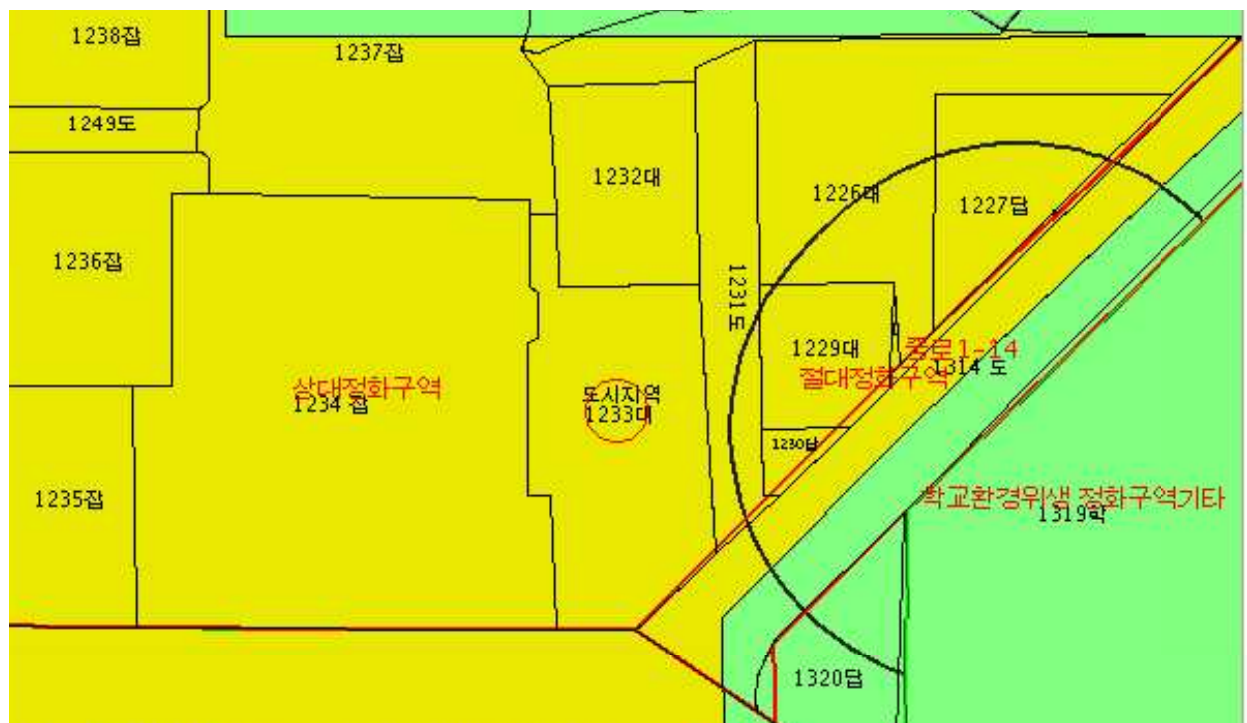
연번	구분	재산의 표시	수 량 (면적)	예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소관부서	비고
91	토지	입암리 202-1	1,653	214,890	2014-07-15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부지	지역경제과	
92	토지	입암리 203-2	82	6,823	2014-03-17			
93	토지	입암리 219-1	245	28,093	2013-04-15			
94	토지	입암리 219-2	843	96,664	2013-04-15			
95	토지	입암리 220	846	93,624	2013-01-24			
96	토지	입암리 221-1	55	13,513	2014-01-14			
97	토지	입암리 221-5	605	148,648	2014-01-14			
98	토지	입암리 221-3	130	19,847	2014-08-13			
99	토지	입암리 221-7	2,714	411,734	2014-01-14			
100	토지	입암리 225-1	440	66,000	2014-08-13			
101	토지	입암리 225-3	129	19,730	2014-01-14			
102	토지	입암리 226-1	600	90,000	2014-08-13			
103	토지	입암리 226-6	93	13,919	2014-04-02			
104	토지	입암리 228-1	516	125,697	2014-01-14			
105	토지	입암리 228-3	127	19,805	2014-01-14			
144	토지	입암리 16-3	4,634	203,166	2014-01-14			
145	토지	입암리 16-1	132	6,248	2013-03-29			
146	토지	입암리 34-6	24	5,196	2014-08-13			
147	토지	입암리 33-2	12	2,598	2014-08-20			
148	토지	입암리 37-3	15	2,017	2015-07-07			
149	토지	입암리 35	200	26,900	2015-07-07			
150	토지	왕대리 308-12	642	98,226	2016-04-05			
151	토지	입암리 29-7	727	175,934	2016년			
152	토지	입암리 29-8	94	22,748	2016년			

#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 1. 공공청사 부지매입(신도안면사무소 및 신도안보건지소)



위 치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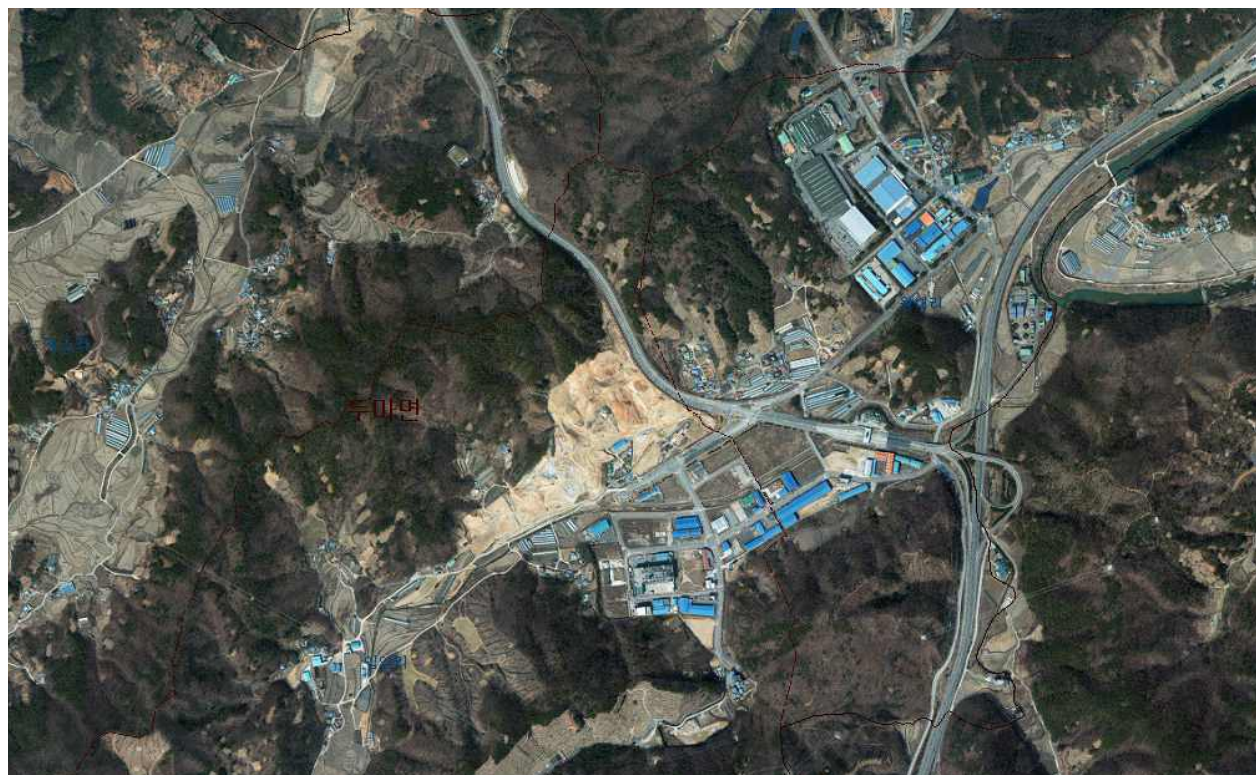


토지이용계획도

## 2. 계룡 제1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위 치 도



현황사진

## 관련법령 발취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2.4., 2015.1.20.>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③ ~ ⑤ : 생략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 ⑦ : 생략

## □ 계룡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기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8.13>, <개정 2015.11.2.>

② 생략

#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1195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출자	계룡시장

## 1. 제정이유

-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휴게음식점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와 필요 서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영업장소와 붙임서류(안 제2조)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 등록증, 신고증, 사용계약서
  - 「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점용허가증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시설 사용계약서
  - 그 밖에 계룡시장이 정하는 장소 및 시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9. 8. ~ 9. 27.(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2.(원안동의)

##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조의2 제9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장소와 그에 따른 붙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

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

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4. 그 밖에 계룡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를 정할 수 있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의 신고 시 첨부서류** (제42조제1항제14호 관련)

1. 유원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원시설업 영업장(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 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이 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유원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유원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또는 제11조제4항에 따른 유원시설업 허가증 또는 유원시설업 신고증 사본
  - 나. 유원시설업자가 아닌 자가 유원시설업 영업장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유원시설업자와 체결한 유원시설업 영업장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2. 관광지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이하 이 호에서 "관광지등"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가. 「관광진흥법」 제55조에 따른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같은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토지·관광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나.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가 아닌 자가 관광지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관광지등의 사업시행자나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관광지등의 토지 등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3.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이하 이 호에서 "체육시설"이라 한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체육시설업자(이하 이 호에서 "민간체육시설업자"라 한다)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등록증 사본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업 신고증명서 사본
  - 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해당 직장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직장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다. 민간체육시설업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 또는 직장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체육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업자나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체결한 체육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4. 도시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

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또는 공원수탁관리자와 체결한 도시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5. 하천: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한 하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가. 「하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천관리청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하천법」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에 관한 하천의 점용허가(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를 받은 자

1) 시·도지사

2) 시장·군수·구청장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6.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이 호에서 "학교"라 한다)에서 해당 학교의 경영자 외의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과 체결한 학교시설의 사용 계약에 관한 서류

7. 고속국도 졸음쉼터: 「도로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의 졸음쉼터(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졸음쉼터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2조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와 체결한 졸음쉼터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8. 공용재산: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가. 「국유재산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

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공용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9. 그 밖에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이 호에서 "시·도"라 한다)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시설 또는 장소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으로서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서류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 충남계룡036			
정책명	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신현주	전화번호	042-840-2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로 점검하고, 모든 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음'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계룡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9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p> <p>기획감사실장 귀하</p>				

##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96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제정이유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사도의 구조(안 제2조)
  -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평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 사도의 관리(안 제3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9. 8. ~ 9. 27.(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2.(원안동의)

##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평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조(사도의 관리)** 사도는 사도개설자가 관리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

제4조(사도의 폭 등 기준)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 단서에 따라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사도의 구조 및 안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사도의 구조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 □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5조(차선 및 차도) ③ 리도 및 농도를 1차선으로 설계할 경우의 차선평은 다음 표의 폭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리도의 차선평을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차선평(미터)
리도	5.0
농도	3.0

제7조 (길어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어깨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길어깨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구분	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면도	1.0	0.5
리도	0.75	0.5
농도	0.5	-

## □ 사도법 제5조

제5조(사도의 폭 등 기준)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충남계룡035			
정책명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신현주	전화번호	042-840-2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체크리스트 및 분석평가서의 모든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표시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계룡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2016년 09월 19일				
<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 (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				
<b>기획감사실장 귀하</b>				

#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제1197호
---------	--------

제출일자	2016. 10. 6.
제 출 자	계룡시장

## 1. 제정이유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2.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정의(안 제2조)
-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안 제3조)
  -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 1.
- 나. 예산사항 : 해당없음
- 다.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16. 9. 8. ~ 9. 27.(제출의견 없음)
  - 2) 성별영향분석평가 : 붙임 2.(원안동의)

##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보호 및 경영 안정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 “양도 및 상속”이란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자에게 해당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취득한 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 다만,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에 따라 양도가 금지될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도 양도가 금지된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제14조(사업의 양도·양수 등)

③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운송사업자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 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5조제2항

제15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 ①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7., 2013.3.23., 2015.6.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로 사업면허의 수요·공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6.22.>

<b>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b>				
관리번호	2016A 충남계룡034			
정책명	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소관부서	기관명	충청남도 계룡시		
	부서명	기획감사실		
	담당자명	신현주	전화번호	042-840-2062
분석평가서 제출날짜	2016년 9월 19일			
주요 분석평가 내용 (기획감사실)	조례 제정안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 항목별로 점검하고, 모든 점검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어 '없음'으로 분석평가함			
종합 검토 의견 (분석평가책임관)	<input checked="" type="checkbox"/> 개선사항 없음 <input type="checkbox"/> 자체개선안 동의 <input type="checkbox"/> 개선의견			
	<p>「계룡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 성별특성 반영, 성별 균형 참여 등 개선할 사항이 없음</p> <p>○검토의견 반영계획서 : 해당 없음</p>			
<p>「성별영향분석평가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년 09월 26일</p> <p style="text-align: center;"><b>계룡시분석평가책임관</b></p> <p style="text-align: center;">(담당자/연락번호 : 이지연/042-840-2323)</p> <p>기획감사실장 귀하</p>				